

##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3월 23일(목) 오전 9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(평동) 디타워 돈의문 3층 교육장(세미나실)  
(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)  
※ 문의) 대표전화 : 02)2011-7114, 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www.dlenc.co.kr>

### 3. 회의 목적사항

《보고사항》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영업보고

#### 《부의안건》

- 제1호 의안 : 제2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
※ 현금배당(안) : 보통주 1,000원(20%), 우선주 1,050원(21%), 2우선주(전환) 1,000원(20%)
- 제2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(1명 / 첨부 참조)
- 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
※ 당기 이사 보수한도 : 30억원
- 제4호 의안 :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(첨부 참조)

### 4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- 주주님께서 본인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19의 전파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대신 위임장 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 드립니다.

### 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#### ※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-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(모바일) 주소 : <https://vote.samsungpop.com>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3년 3월 13일 ~ 2023년 3월 22일

-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PASS인증,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를 통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#### ※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유의사항(코로나19 관련)

- 국내외 감염지역 방문자, 발열 및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총회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제공시킬 예정입니다.

2023년 2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(평동)  
D L 이 앤 씨 주 식 회 사  
대 표 이 사 마 창 민 (직인생략)

< 첨부 >

<제2호 의안>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

의안 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요 약력		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
		추천인	기간	내용		
제2호	신재용 (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)	1972.02.27.	2010 ~ 현재	서울대 경영대학 교수	없음	없음
			2015 ~ 2016	한국회계학회 국제교류 부회장		
		인사위원회 (舊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)	2014 ~ 2017	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		
			2006 ~ 2010	일리노이대학 회계학과 조교수		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 (최근 5년 이내)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(최근 5년 이내)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신재용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<제4호 의안>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·후 비교표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								
제1조 (목적)	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제2항에 의거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좌동									
제2조 (적용대상)	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와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.	좌동									
제3조 (퇴직시기)	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.	좌동									
제4조 (퇴직금)	<p>①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연봉에 10%를 승하여 매월 퇴직연금으로 분할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. 단, 근무지역에 따라 기본연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역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한다.</p> <p>② 임원 재직기간중 기본연봉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은 각 직위나 직급별로 재직기간 및 기본연봉을 구분하여 1항에 따라 계산 및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①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"월급여 X (근속일수 ÷ 365) X 지급률"로 한다.</p> <p>② 『월급여』라 함은 임원의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역할급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, 그 외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수당 및 경비, 성과급, 복리후생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『근속일수』이라 함은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 까지를 의미한다.</p> <p>④ 『지급률』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직급</th> <th>지급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장 이상</td> <td>4.0</td> </tr> <tr> <td>부사장/전무</td> <td>3.0</td> </tr> <tr> <td>상무</td> <td>2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"해당월의 월급여 ÷ 12 X 지급률 1.0"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당해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다.                      2. 제4조 4항의 지급률과 총 근속일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을 매년 12월 중에 정산하여 당해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다. 이때 제4조 5항 1호에서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.</p> <p>⑥ 임원의 직급 혹은 보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, 퇴직금은 각 직급 혹은 보수를 적용받는 "기간별 월급여 x (근속일수 ÷ 365) x 지급률"로 일할 계산한다.</p>	직급	지급률	사장 이상	4.0	부사장/전무	3.0	상무	2.5	퇴직금 계산식, 지급방법 등 퇴직금 방식을 명시
직급	지급률										
사장 이상	4.0										
부사장/전무	3.0										
상무	2.5										

		⑦ 회사는 임원과의 개별 합의 및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제4항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약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약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.	퇴직금 의사결정주체 구체화
제5조 (퇴직위로금)	회사는 임원 재임기간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퇴직 직전 월 급여의 3개월 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, 동 금액은 제4조의 퇴직금으로 본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① 퇴직 후 고문으로 선임된 경우 ② 관계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한 경우 ③ 제6조에 정한 사유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퇴직한 경우	삭제	기존 (퇴직위로금) 삭제
제5조 (퇴직금 지급의 특례)		① 임원이 관계 회사로 전출되는 경우,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관계 회사에서 승계한다. 단, 당해 임원이 퇴직금 정산을 청구하는 경우 전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② 관계 회사로부터 전입되는 임원의 경우, 당해 임원의 정산되지 않은 전출 회사에서의 퇴직금은 전입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.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(집행유예 포함)의 형을 받아 퇴직(사임, 해임 등 포함)하거나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④ 사외이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	관계회사 전출/입시 이관 근거 명확화  지급제한 사유 및 의사결정주체 구체화
제6조 (지급제한)	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	좌동	
부칙	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제2조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.	제1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②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단,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이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,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변경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.	개정/시행일 추가 규정 적용 기간 명확화